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항목별 운령 및 지침(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최근 4년간)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4 페이지) 전항목 공통 기재 금지 사항	2021학년도 ■ 문구(항목) 추가(작성 시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2022학년도 전년도와 동일	2023학년도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작성 시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2024학년도 전년도와 동일
	(p.19)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 (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지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지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유의사항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 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기재불가 공인어학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 (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 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유의 사항	전항목 공통 기재 금지 사항 (p.19)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증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다.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¹⁾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²⁾ 등 1) 기관명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¹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¹ 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 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 소청시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사·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교육관련기관(의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 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전항목 공통 기재 금지 사항 (p.19)	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경력'이외 항목 입력 불가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이외 항목 입력 불가		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경력'이외 항목 입력 불가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이외 항목 입력 불가	
유의 사항	고교 정보 관련 내용 기재 불가 (p.20)	■ 기재요령(추가)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 은 '학적사항', 수상 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기재요령(신설)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문의 방법]		[문의 방법] 학교에서	[문의 방법]
학교 생활 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및 문의 시 유의사항	-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에 질의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단위 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전년도와 동일	-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에 질의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단위 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에 질의함.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해석에 대한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문의 방법	뉴의자영 (p.21)	[유의사항] •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 (학교폭력, 자유학기,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학교폭력, 자유학기, 특수교육 등) 담당 부서로 질의함.		[유의사항] ●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 (학교폭력,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자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학교폭력, 특수교육 등) 담당부서로 질의함.	[유의사항] •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 (학교폭력, 특수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 업무(학교폭력, 특수교육 등) 담당 부서로 질의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	학년도	2022학년도		2023호	박년도		2024호	년도
		■ 문구(항목) 수정(해설)		■ 문구(항	목) 수정(해설)		■ 문구(항목	록) 신설(해설)	
		☞ 입력주체			☞ 입력주차			☞ 입력주체		
		항	목	입력 주체	:	항 목	입력 주체		방 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출결상	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항 특기사항 조치상황 관리	학급담임교사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자율활동·진로활동		창의적	자율활동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학급담임교사
	항목별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체험활동 상황	<u>진로활동</u>	학급담임교사	상황	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87일 입력 주체	특기사항 	동아리활동	<u>해당 동아리 담당</u> 교사	영역별 특기시항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영역별 특기사항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p.28)	교과학습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교환습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교과학습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발달상황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발달상황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발달상황	개인별 세부능력 및	학급담임교사
		독서활	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독사	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독서:	특기사항 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처리		행동특성 및	Ų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학급담임교사
요령	학생부 정정 주체 (p.29)	대장 결재 절차에 띠	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I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시가 들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오	ト 동일	☞ 나. 학교상 대장 ? 정정차	결재 절차에 따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I 발견 학년도 담임교시가 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 의 정정한다.
	학생부 대필 금지 (p.29)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학생이 직접 작성한 기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전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악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평가서, ③수업산출물(수행	■ 문구(항목) 수정(해설) □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 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 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전년도오	ł 동일		전년도외	·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생부 대필 금지 (p.29)	-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 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 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해설		■ 문구(항목) 추가(해설)	
	부정청탁	☞ 라.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 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 ※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		대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 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18.11.19.). ※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교육	
	금지 (p.29)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	전년도와 동일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	전년도와 동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처리 요령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논문심사 · <u>학위수여</u>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문구(항목) 수정(해설)	■ 문구(항목) 삭제(해설)		
	영문 입력의 부득이한 경우 (p.29)	☞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	☞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해설	■ 문구(항목) 수정(해설)		
		☞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적 변동 학생의 각종 자료 처리 방법 (p.30)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전입생의 자료는 기본학적, 학생생활 관련 누가기록자료,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자료, 개별화 교육계획 등임. ※학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입력·관리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바, 전산입력 방법도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 전입생의 자료는 기본학적, 학생생활 관련 누가기록자료,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자료, 개별화 교육계획 등임. ※ 학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입력·관리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바, 전산입력 방법도		
처리 요령	수상대상자의 전출 시 처리 방법 (p.30)	그 중 하나에 해당함. □ 해설 [기재 방법] □ 재괴우수상 대상자나 사정회 수상대상자가 시상 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 [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그 중 하나에 해당함.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기재 방법] [조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출입 시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 관리 방법 (p.30)	■ 문구(항목) 추가(해설) ***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을 통해 전송된 자료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입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한다. *** 전출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된 조치사항을 공문을 통해 전입교에 전송하고, 전입교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 (항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추가 기록 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한다.			
	타교 편입학 시 자료 전송 방법 (p.30)	■ 문구(항목) 수정(해설) ☞ 타교 재취학·편입학 시 자료 송부 방법은 위 <u>'차'</u> 항을 준용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 <u>타교 편입학</u> 시 자료 송부 방법은 위 '차' 항을 준용한다.	전년도와 동일
처리 요.		■ 문구(항목) 추가(해설) Isa 제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하등 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초, 중, 고)'를 활용함. ※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함. ※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회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문구(항목) 삭제 및 신설(해설) 16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핵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초, 중, 고)'를 활용함. ※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함. ※ [민원]의 출력상세경로는 [민원]-[민원접수처리 관리]-[제증명민원접수]-[학생관련민원접수]의 [민원사무명)에서 '생활기록부(초,중,고)'와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임. ※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의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시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개인정보 파기 (p.31)	■ 문구(항목) 수정(해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u>아니도록</u> 조치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u>아니하도록</u> 조치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처리 요령	훈령 제243호 (2018.3.1.) 이전의 훈령이 적용된 학생의 복귀 시 글자수 축소에 따른 조치사항 (p.31)	■ 해설(신설) □ 환경 제243호(2018.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제280호(2019.3.1.)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아 항목별 입력 가능한 글자 수가 축소되는 경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된 글자수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8	훈령 제477호 (2024.3.1.) 이전의 훈령이 적용된 학생의 복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절차 (p.31)				■ 문구(항목) 신설(해설) 137 너. 훈령 제477호(2024.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옮겨 적어야 할 경우, 정정 절치를 거쳐 가존의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해야 한다.
	유의 사항 (p.31)	■ 문구(항목) 추가(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함 ※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복시하여 입력한	■ 문구(항목) 수정(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함 ※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한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함.	경우 글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함.		
		-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 (번호) 입력은 지양함.	-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 (번호) 입력은 지양함.		
처리 요령	유의 사항	-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하며 문단(내용)단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 있음	-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하며 문단(내용)단위로 줄 바꿈을 하여 입력할 수 있음		
	(p.31)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 훈령 제7조(인적·학적사항)			□ 훈령 제477호 제7조(인적·학적사항)(1학년)
	훈령 제7조(인적· 학적사항)4항 (p.33)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훈령 제393·433호 제7조(인적·학적사항)(2·3 학년) 전년도와 동일
	유급의 개념	□ 훈령 별표 7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7)
인적 ·	(p.34)	☞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학적 사항		□ 훈령 별표 7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7)
	휴학의 개념 (p.34)	☞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 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휴학: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훈령 별표 7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7)	
	유예의 개념 (p.34)	☞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자퇴의 개념 (p.34)	□ 훈령 별표 7 ☞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7) □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u>바람으로</u>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퇴학의 개념 (p.34)	□ 훈령 별표 7 ☞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7) ☞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학적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인적 · 학적	조기졸업의 개념 (p.34)	□ 훈령 별표 7 □ 훈령 별표 7 □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7) FIST 조기졸업: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사항	명예졸업의 개념 (p.34)	□ 훈령 별표 7 □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훈령 별표 7) □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전년도와 동일
	특수 교육 대상자의 학적 처리 (p.35)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해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에 준하여 처리함.(중학교 기재요령 '인적·학적	■ 문구(항목) 수정(해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에 준하여 처리함.(중학교 기재요령 '인적·학적	■ 문구(항목) 수정(해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에 준하여 처리함.(중학교 기재요령 '인적·학적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특수 교육 대상자의 학적 처리 (p.35)	사항' 참고)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사항'참고)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사항' 참고)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문구(항목) 추기(해설)	■ 문구(항목) 수정(해설)		□ 문구(항목) 삭제(해설)(1학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삭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학년)에 신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호(전학), 제9호 (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시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호(전학), 제9호 (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		□ 문구(항목) 수정(해설)(2·3학년)
		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학교폭력 기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인적 · 학적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적 변동 제한 (p.35)	※ 역교목덕 기에약정은 역교목덕대색임의위원회의 조치 확정 후 이행 완료 시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함. 단, 학교의 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역교목력 가여약성은 역교목력 자연이 접구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u>이행이</u>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함. 단, 학교의 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호(전학), 제9호 (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 일자(교육 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 변동은 제한함. 다만, 가해학생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별표 7 해설	■ 문구(항목) 수정(별표 7 해설)		
		জে 입학	জ 입학		
	입학 (p.35)	 1)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옴. 2)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1)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2)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p.35)	□ 별표 7 해설 나. 유급 중략 다. 편입학 후략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7 해설) 나. 편입학 ···· 중략 ··· 다. 유급 ···· 후략 ···
인적 · 학적 사항	명예졸업 해설 및 처리 절차 (p.36)	□ 별표 7 해설 ©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②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 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핵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7 해설) ©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② 심의 절차: 심의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 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핵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전년도와 동일
	학생 정보 (외국인의 이름 입력) (p.37)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SS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학생주소 연계 메뉴경로 안내 (p.37)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 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라.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 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인적・작항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p.37)		답한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하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 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 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제 - [기본학적관리 - [기본신상관리] ▶ 핵업중단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 [정정대장관리 - [정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 [정정대장관리 - [정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 [정정대장관리 - [절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 [정정대장관리 - [절정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학업장보인의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 ▶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제 - [졸업생자료관리 - [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교육정보 시스템의 [학생부보존 - [학생부보존(고)/학생부보존(특)] - [학생부보존 - [학생부보존(고)/학생부보존(특)] - [학생부정정대장작성] ※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전년도와 동일	□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하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p.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학적 특기사항 입력 시 유의사항 (p.38)	□ 기재요령 ☞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 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입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인적 · 학적 사항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p.39)	□ 기재요령 다. '특기사항' 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1)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2)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항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는 변경 하지 않음. 3)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 신상관리]에서 {학적사항; 탭의 '학적특기사항'란에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1학년) 《삭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학년)에 신설 □ 문구(항목) 삭제 및 수정(기재요령)(2·3학년)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기해학생 조치사항 입례 다. '특기사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기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1) 〈삭제〉 2) 〈삭제〉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 신상관리]에서 {학적사항} 탭의 '학적특기사항'에 입력함.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p.40) 전입 학생의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 (p.40)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ESF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ESF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ESF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ESF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치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인적 · 학적 사항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전입학의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출·입 일자 기준일 (p.40)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 인정과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 인정 추가 및 수업일수 제외)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 인정과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 인정 추가 및 수업일수 제외)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재 경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 18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 인정과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 인정 추가 및 수업일수 제외) 18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삭제〉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유급·재입학 •편입학 •복학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 입력 방법 및 정정 증빙자료 (p.40)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IMS 재입학·편입학·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 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 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입학·편입학·복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문구(항목) 추가 신설(기재요령) 『 재입학·편입학·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 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 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입학·편입학·복학 후 새로 수행 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기재요령) ©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 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후의 내용은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전년도와 동일
인적 · 학적 사항	귀국학생 등의 외국 학교 수학 사실 입력 등 (p.42)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EST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의 학교급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 EST 외국인인 학생과 인정 유학으로 자퇴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 FF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FF 외국인인 학생과 인정 유학으로 자퇴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라.1)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 5) 외국인인 학생과 인정 유학으로 자퇴한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할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핵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귀국학생 등의 제출 서류 (p.42)	□ 기재요령 ☞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귀국학생 등의 제출 서류 (p.42)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 (대사관)의 공증 필요 (2) 성적증명서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이포스타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시관 (대사관)의 공증 필요 (2) 성적증명서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인적 · 학적 사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p.43)	□ 기재요령 라)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6).나) 학년 배정 방법 (라)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u>제1호</u>).
	한국 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이전학년도 자료 입력 (p.44)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 국내학교(A) 전출 → 한국학교(B) 전입・전출 → 국내학교(C) 전입 시 국내학교(A) 또는 한국학교(B)로부터 이전학년도 자료를 받아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전출·입처리 방법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설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u>학적</u> 처리 방법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차.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학적 처리 방법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학적 처리 방법 (p.46)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 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 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마'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 한다. ※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 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 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 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비' 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 한다. ※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 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 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 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비'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 한다. ※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은 공란으로 둠.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 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 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트외국인학교가 있음.
		□ 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인적 · 학적 사항	소년보호기관 입교 시 처리 방법 및 소년원 교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관련 법령 (p.47)	 ☞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입교한 경우, 원적교에서는 [참고자료 6]을 참조하여 위탁학생 등으로 처리한다. 소년원 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공기, 「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고용노동부) 	전년도와 동일	 ☞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교한 경우, 재적교에서는 [참고자료 6]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소년원 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고용노동부) 	 □ 4)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교한 경우, 재적교에서는 [참고자료 6]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 소년원 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고용노동부)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비밀처리 방법 (p.47)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학교, 거주지, 연락처등을 비밀로하여 2차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전년도와 동일	☞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1) <u>피해 학생이</u>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기해자(친권자 포함에게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비밀처리 방법 (p.47)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2)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 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 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발생 사실 입증의 객관적 자료 (p.48)	□ 기재요령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객관적인 자료의 예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u>학대 피해</u> 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전년도와 동일
인적 · 학적 사항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p.48)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판.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1) 학생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교육 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시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구분 설정을 '기타'로 하여 등록한다. ※ 2024학년도 이전의 내용은 '교육복지정책과 -6434(2023.10.10.)' 공문을 근거로 정정할 수 있음.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의 '수여기관'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교로 입력함.
	영재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p.48)	□ 기재요령 하.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영재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2) 영재학교 재학 중 영재학교가 아닌 학교로 이동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거.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영재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2) 영재학교 재학 중 영재학교가 아닌 학교로 이동 하는 경우는 전출・입으로 처리하되, 학업성적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적 · 학적 사항	영재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p.48)	하는 경우는 전출·입으로 처리하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하여 관리한다. 〈기재 경로〉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 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하며, 이전 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 [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입력함.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하여 관리한다. 〈기재 경로〉 ▶ '전입교'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입관리- 전입관리-전편재입/복학생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및 자료 요청하며, 영재학교는 [학적-전출 관리-전출관리-전출자료요청접수]에서 전출생 자료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인적·학적사항을 전송함.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훈령 제8조(출결 상황)4항 (p.49)	□ 훈령 제8조(출결상황)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훈령 제477호 제8조(출결상황)(1학년)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훈령 제393・433호제7조(출결상황)(2・3학년) 전년도와 동일
출결 상황	별표 8의 항목 표시 형식 (p.49)	❖ 별표 8의 항목 표시 형식은 교육부훈령 제433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표기상의 통일을 위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표시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별표 8의 항목 표시 형식은 교육부훈령 제477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표기상의 통일을 위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표시함.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재입학· 전입학·복학 불가능 경우 (p.50)	□ 훈령 별표 8 187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8) EST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학교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학년 과정의 수료에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제2항 참조).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	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훈령 별표 8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훈	령 별표 8)	■ 문구(항목) 신설	!(훈령 별표 8)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8)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5) 「초·중등교육법」제28조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7항 어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출석인정 결석 유형 (p.50,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 하지 못하였음을 길	내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I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대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 I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I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때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 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장이 인정한 경우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호조치 요청 이전에, 로 인한 피해로 출석 14조제3항에 따른	따른 학교폭 위원회의 학 요청 이전에, 인한 피해로 제14조제3항	망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가구의 조사 서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장이 인정한 경우	최 및 동 위원회의 조치 요청 이전에, 인한 피해로 출석 4조제3항에 따른
	p.51)		니,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남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기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역		_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참여하는 경우	10)「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네에 관한 법률」에
출결 상황						(본회의, 상임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 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11)「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신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을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중	일 참석)을 사유로
		□ 훈령 별표 8				■ 문구(항목) 수정	l 및 삭제(훈령 별표 8)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로 인 ^歳	h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E	H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u></u>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71 T. I.	입 양	○ 학생 본인		20	입 양	○학생 본인		20
	경조사 일수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p.50)	사 망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		3	사 망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 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의 배우사	1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비	바우자	1
		☞ ※ 경조사 일수에 조 인정함.	 	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	!수에 한해 출석 <u>으로</u>	☞ <u>※ 경조사 일</u> 수	는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		·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문구(항목) 신설(훈령 별표 8)	■ 문구(항목) 추가(훈령 별표 8)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훈령 별표 8)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u>결석 신고서</u> 를 <u>결석한 날로부터</u> 5일 이내에 제출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출결 상황	질병으로 인한 결석 (p.51)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 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기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년도와 동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기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공하였다. 경우 가장 기술 기업 등 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세소견세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교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함께 하고자의 소인을 받을 경우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미인정 결석 유형 (p.51)	■ 문구(항목) 신설(훈령 별표 8) ☞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기타 결석 유형 (p.52)			■ 문구(항목) 신설(훈령 별표 8) □ '공직선거법」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전년도와 동일
출결	결과의 정의 (p.52)	□ 훈령 별표 8 □ 훈령 별표 8 □ 조리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8) ☞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u>불참한</u> 경우
상황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학생 처리 (p.52)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8) ESF 소속 학교에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 에서의 수강 학생 처리 (p.52)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8) ✓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8) ✓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 출결처리	● 출결처리		
		-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 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 한다.	-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 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 한다.		
		● 성적처리	● 성적처리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결 상황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 에서의 수강	-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 처리 (p.52)	☞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β.02)	•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 출결처리	● 출결처리		
		-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한다.	-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한다.		
		-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성적처리	● 성적처리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 한다. 	-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 한다.		
		-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 한다.	 학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u>제65조</u>,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 에서의 수강 학생 처리	• 성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 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 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 성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 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 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역생 서디 (p.52)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출결 상황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결과의 정의 (p.54)	□ 해설 □ 하성 □ 가.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 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 문구(항목) 수정(해설) □ 다.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 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등을 말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입력 (p.54)	□ 해설 □ 해설 □ 바. '특기사항'란에는 질병·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바. '특기사항'에는 질병·미인정 <u>으로</u>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u>횟수가 많은 단기결석·</u>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출절상황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p.54)	□ 해설 사.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 (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즉시 입력한다. ※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음.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해당학생에 대해'특기사항'란에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삭제(해설)(1학년) 《삭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학년)에 신설 □ 문구(항목) 수정(해설)(2·3학년)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사. '특기사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 (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 일자 (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조치결정 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음.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출결플기사항등록]에서 해당학생에 대해 '특기사항'에 입력함.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재입학· 전입학· 복학생의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의점 (p.55)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등)에 따라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출결 상황	상위 법령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p.55)	□ 해설(별표 8) ☞ 별표 8 2조 나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별표 8 2조 나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현역병 지원 입대에 대한 출결처리 (p.55)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자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위탁학생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현장실습'이수로 처리함	결석'으로 처리함	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 결석'으로 처리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ES 나. 결석 3)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학과(직업교육 위탁과정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현장실습'이수로 처리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법원 소년부의 조사・ 심리 기간과 소년분류 심사원 재소 기간에 대한 처리 (p.55)	□ 해설(별표 8) □ 해설(별표 8)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 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소년법」제12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임무) 제2항제3호,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 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소년법」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학적관리)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등)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인정)제1항).	전년도와 동일
출결 상황	(국제 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자격의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p.55)	□ 해설(별표 8)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기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수업 결손에 따른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학생선수라 함은「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기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수업 결손에 따른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학생선수라 함은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관련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전년도와 동일
	'가정 학습' 승인 조건 (p.56)	□ 해설(별표 8) □ 해설(별표 8)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u>'심각'</u>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보호 관찰소 에서 명한 사회 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 기간,	□ 해설(별표 8) □ 해설(별표 8) □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 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대안교육 기간에 대한 출결 처리 (p.56)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 일수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관한 법률」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의 이수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p.56)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제17조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 <u>학내외</u>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출결 상황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 범위 (p.56)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생리결에 대한 출결 처리 (p.56)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¹⁸⁸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생리결에 대한 출결 처리 (p.56)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출석 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출석 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출석 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학교폭력 대책심의 위원회에 출석 시 출결처리 (p.57)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12)학교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출결 상황	투표 참여에 따른 출석 인정 범위 (p.57)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③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문구(항목) 추가(별표 8 해설) □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사전투표의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하교 후, 주말 등)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 포함)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정치활동 참여 관련 출결 처리 (p.57)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공직에 선출된 자가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특기사항'란에 '교외활동(0일)'로 사유를 입력한다. 단,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은 출결특기사항 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하지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제출 기한 (p.57)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16) 별표 8 '2조 다목'의 <u>결석 신고서</u> 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시 출결 및 성적 처리 방법 (p.57)	■ 문구(항목) 추가(별표 8 해설) □ 별표 8 '2조 라목' 5)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 (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출결 상황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결 처리 (p.58)	□ 해설(별표 8) □ 하설(별표 8) □ 한 대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6호'의 출결 처리 및 입력 (p.58)	□ 해설(별표 8) □ 해설(별표 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2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된다. ※ 1학년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고, 2·3학년 학생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함.
			■ 문구(항목) 신설(별표 8 해설) □ 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 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상	소속 학교 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방송·정보 패체한 수강 학생의 수강 학생의 (p.58)		1)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 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계획 수립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기 중 계획 수립 가능 2) 출결 처리: 출결 확인은 원격수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교과담당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매 교시별 출석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활용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실시간 쌍병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생활 하는 경우 3일 내 철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출결 미감은학급 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월 단위로 할 수 있다. ※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결(마감)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곤란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에 한하여,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출결 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운영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 철생 등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함 수 있다 병대 위원 환경에 한하여,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출결 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운영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함 3) 평가 결과 처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소속 학교 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방송·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 학생의 출결 등 처리 (p.58)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지필 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하고, 세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별표 9를 참조한다. ※ 지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함. 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처리: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 기관 등에서 방송·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 하여 수업 받는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p.59)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기관(다문화학생 위탁형 예비학교 포함),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한다.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18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학생 위탁형 한국어학급 포함,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받은 교육을 말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p.59)	□ 해설(별표 8) 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교육부의 연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8 해설) 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부의 연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5호의 출결 처리 (p.61)	□ 기재요령 ☞ 결석일수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결석일수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u>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u>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장기 결석의 범위 및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질병 결석 사유 처리 방법 (p.61)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출결 상황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 및 지각·조퇴· 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 (p.61)	□ 기재요령 ☞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 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많은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 입력할 수 있는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학생선수 출결처리 (p.63)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을 허가할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한용 일수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4호).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4호).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절 상황	학생선수 출결처리 (p.63)	초과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한다(중략)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기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 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시)을 근거로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중략)…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 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의2. 국가대표 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 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음. □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동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 **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시》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기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에서 4일 제외함. □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시 1일로 간주 《예시》학생선수가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EW 1)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하용 가능하다. EW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의2. 국가대표 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EW 2)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가)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시》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기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에서 4일 제외함. 나)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조퇴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생선수 출결처리 (p.63)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출결 상황	학업중단숙려 참여 학생 출결처리 (p.64)	□ 기재요령 □ 기재요령 □ 나. 학업중단숙려 참여 학생 출결처리 방법 1)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 ※ 해당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나. 학업 중단 숙려 참여 학생 출결처리 방법 1)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 ※ 해당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8항).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 (p.64)	□ 기재요령 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04.06.부터 적용).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04.06.부터 적용).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에 실시간 미세 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등을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 □ □ □ □ □ □ □ □ □ □ □ □ □ □ □ □ □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 (p.64)	우리동네 대기정보(앱)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 결석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 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소년보호기관별 출석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 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 소년보호기관별 수업 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 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rs 소년보호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 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위탁 학생의 수업일수 처리 방법	☞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 학교 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전년도와 동일	대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시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u>1개월</u> 이내의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8호) 기간은 재적 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출결 상황	(p.6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 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대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로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 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형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 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기재요령	■ 문구(항목) 추가 신설(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기재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기관 위탁학생 관리 (p.65)	다 이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대 이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 ('21.10.29.) 참조)	전년도와 동일	□ □ □ □ □ □ □ □ □ □ □ □ □ □ □ □ □ □ □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기관 위탁학생 관리 (p.6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대 피해학생의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의 '수여기관'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교로 입력함('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 (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 ('23.4.10.) 참조).
•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삭제 및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출결		☞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업과정학생, 건강장애학생,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의 학적관리 및 출석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	☞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지방자치 <u>단체</u> , 직업 <u>위탁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u> 방송·정보통신매체, 국내교환학습, 공동교육 <u>과정</u> 등의 학적관리 및 <u>수업일</u> 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	☞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방자치 단체, 직업위탁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 방송·정보통신매체, 국내교환학습, 공동교육 과정 등의 학적관리 및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	☞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방자치 단체, 직업 교육 위탁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 방송·정보통신매체, 국내교환학습, 공동 교육과정 등의 학적관리 및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
상황	위탁학생 처리방법 (p.66)	 ◇기재 경로〉 ▶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과정학생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공동교육과정은 '학교간공동교육과정'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록함. ※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7]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 참조함. ※ 위탁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함.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입력하되 자료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기재 경로〉 ▶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과정학생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공동교육과정은 '학교간공동교육과정'으로, 나머지는 '기타'로등록함. ※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기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 참조함.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입력하되 자료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기재 경로〉 ▶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직업 위탁기관은 '직업과정위탁교육'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학교밖 교육은 '학교밖교육'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등록함. ※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기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 참조함. ※ 위탁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함.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기재 경로〉 ▶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u>직업</u> 교육 위탁기관은 '직업교육위탁과정'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항교 밖교육은 '학교밖교육'으로, 나머지(학생미혼모 포함)는 '기타'로 등록함. ※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7]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 참조함. ※ 위탁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함.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출석인정 결석의 사유 특기사항에 입력 불가 (p.66)	□ 기재요령 ☞ ⑤ 특기사항 나. 특기사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다.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이외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이동 후 수정(기재요령) ESF
수상	교내상 입력 (p.67)	■ 문구(항목) 삭제(해설) ☞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	■ 문구(항목) 수정(해설) Last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금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경력	수상명에 고교 정보 관련 내용 기재 금지 (p.68)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 ※ 단, 수상명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참가 대상과 참가 인원 입력 방법 (p.69)	□ 기재요령 나.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실질적인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참가인원으로 하되,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나.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실제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인원으로 하고,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1)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 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 인원 기준으로 입력함	1)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 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 대상인원 기준으로 적용함.		
	시상계획 변경 (p.70)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ESF 2)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계획(시행학기, 수상비율, 담당 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2학기 시상계획을 변경 (수정·삭제·추기)하여 학교정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수상 경력	수상경력 입력 불가 항목 (p.71)	□ 기재요령 ☞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임명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당선증·임명장· 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수상경력 입력 시 유의사항 (p.71)	□ 기재요령 ☞ 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과 국내학교 간 교환 학생(도·농 교류 등)이 위탁기관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당해 학교의 상장번호 자동채번 설정과 관계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등록하며, '수여기관'에는 위탁기관장을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기재요령) 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과 국내학교 간 교환학생(도·농 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당해 학교의 상장번호 자동채번 설정과 관계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의 {학급별수상관리} 탭에서 등록하며, '수여기관'에는 위탁기관장을 입력함. 단. 학대 피해학생과 학생미혼모의 경우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여기관'에 재적교 학교장을 입력함('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상 경력	유의 사항 (p.71)	■ 문구(항목) 신설 및 수정(기재요령) EST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아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와행사는 '수상경력'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행사명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항목에도 입력할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수 없음). ○ 2021학년도 2~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수상경력은 학생별한 학기에한 개씩만제공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진학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음.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 ESF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아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행사명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입력할 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국가직무 능력표준 이수상황의 성취도 입력 (p.75)	□ 기재요령 ☞ 가. 능력단위의 평가에 따른 성취도(A, B, C, D, E, P, ·)를 입력한다. ※ 현장실습으로 인해 인정점이 부여된 능력단위의 성취도는 'P'로 입력하고,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이수한 능력단위와 학적변동(전출·자퇴·퇴학·전입학 등)으로 인해 성취도 산출이 불가한 능력단위의 경우 '·'으로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가. 능력단위의 평가에 따른 성취도(A, B, C, D, E, P, ·)를 입력한다. ※ 현장실습으로 인해 인정점이 부여된 능력단위의 성취도는 'P'로 입력하고,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이수한 능력단위와 학적변동(전출·자퇴·퇴학·전입학 등)으로 인해 성취도 산출이 불기한 능력단위의 경우 성취도는 '·'으로 입력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 과목 및 실무과목명을 입력한다.	☞ 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 과목 및 실무과목명을 입력한다.	☞ 가. <u>학교교육계획에 따라</u>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 과목 및 실무 과목명을 입력한다.	☞ 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이수한 능력단위는 해당 기초 과목 및 실무 과목명을 입력한다.
		하면 확기 세분류 (능력단원 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장 승인과정 포함	학년 학기 세분류 등력단위 이수 원정수 성취도 비고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이수 원점수 성취도 비고
	국가직무능력	2 2 측정 작업관리 8 · (이남구 과퇴 측정 연간자) 20v3)	학년 학기 세분류 (등최단위권도) 이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축정 작업관리 ①[실무 과목]	축정 (①[실무 괴목 주정 관립관리 용 · · 축정 (학교장승인	2 2 측정 작업관리 (150201051 0 20v3) 12 · · · · · · · · · · · · · · · · · · ·
	표준 이수상황의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2 2 측정 (1502010510_2 8 · · · · · · · · · · · · · · · · · ·	* <u>능력단위 코드 및 (비고)란은 교육정보시스템</u>	2 2 설반 기공 (1502010110 16세) 16 93 A ⑤ [실무과목] 선반되목 (공동)
	비고 입력 (p.76)			<u>에서 자동으로 입력됨.</u>	3 1 선반 기공 (1502010110 16 · · 선만목 (현교 밖)
					※ <u>'능력단위코드' 및 '비고'는</u>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자격증 및					⑤ 정규교육과정 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능력단위를 이수할 경우
인증 취득					⑥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 밖 교육과정을 통해 능력 단위를 이수할 경우
상황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 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11학년도 이후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 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유의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2] 참조).	○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침([참고자료2] 참조).	TH450, 50,	
	사항 (p.77)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단,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 상황은 제공)		
		에서 중 귀득한 시작하는 구기에서 기독합이다.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	○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교 폭력 조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p.78)				■ 문구(항목) 신설(훈령) (1학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해설, 기재요령 내용 생략〉 ※훈령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에 따라 기재요령 내 항목 신설
상황 관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p.84)				■ 각 영역(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로 이동 및 항목 신설(2·3학년) □ 〈훈령, 해설, 기재요령 내용 생략〉 ※ 이전의 훈령을 적용 받는 2·3학년에 적용되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련 항목 신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청소년단체 입력 범위 (p.96)	■ 문구(항목) 수정(훈령) [1학년]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2, 3학년]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훈령 [1, 2학년] [3학년]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3학년]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훈령 [1, 2, 3학년] ☞ ①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형을 모두 압력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헌혈 안내 (p.96)	□ 해설 □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신설(해설) FIST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헌혈 안내 (p.96)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학교단위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학생 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4019 ('23.11.3.)).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표준 가이드라인 (p.97)	[1, 2, 3학년]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 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 [*] 에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선정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산출물(소논문 포함)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증빙자료 예시〉학교교육계획서,학교장의 승인을받은 각종 문서,학생활동 산출물 등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 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전년도와 동일
	입력 가능한	<u>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u>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기재요령)	
	창의적 체험활동 조건	☞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 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p.98)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입력 가능한 창의적 제험활동 조건 (p.98)	2)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학교정이 승인한 체험활동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학교정이 승인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정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기능함.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가구, 단체, 조직등 포함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 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기업 및 사설 기관 제외)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 계획 ②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 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3)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4)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4)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 ① 학교장 승인 ②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보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하면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등 포함	
	특기사항 기재 시 유의사항 (p.100)	☞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 나. 특	방목) 수정(기재요령) 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특기사항 기재 시 유의사항 (p.100)	《예시》월1회,6회, 2021.03.022021.07.08. /5회, 4시간, 학급회·학생자치회 임원 재임기간 등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인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학교육의 경우: 학교육의 경우 함당 자료를 그대로입력하되 자료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라한교육의정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면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등학생의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입력한다.	(예시) 학급회의(월 1회), 학교폭력 예방활동(20 22.03.022022.07.07./5회), 양성평등 교육(4시간)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 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 사항은 입력하지 않음.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자치활동 임원 재임기간 입력 (p.101)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 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 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 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SF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확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학기 시작일부터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학기 또는학년 단위가 아닌월 단위 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실제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FIFT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학기 시작일부터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학년 단위가 아닌월 단위 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실제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자치활동 임원 재임기간 입력 (p.101)	경우 신임 임원 재임 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와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 기간을 입력함.		○ 임원 선거일 이전 전입한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입일로 입력하되,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와 같이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 임원 선거일 이전 전입한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입일로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재임 기간이 2개 학년에 걸쳐 있을 경우 해당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p.102)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 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청소년단체와 자율동아리 입력 범위 및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p.102)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1, 2, 3학년] [3]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 [4]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입력(2021학년도 1학년은 미기재)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떠한 내용도 입력하지 않는다. ※ 2021학년도 1학년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미기재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제공)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입력(2022학년도 1,2학년 미기재)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떠한 내용도 입력하지 않는다. ※ 2022학년도 1,2학년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미기재(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미제공)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기재요령)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 (p.103)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 ※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진로 활동 특기 사항 (p.95, p.104)	■ 문구(항목) 수정(훈령)(제13조제6항) □ 문구(항목) 수정(훈령)(제13조제6항) □ 문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기재요령) □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www.career. go.kr) 직업정보의 직업분류를 참고함. ※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함. (에시) '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 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	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응시한 경우 입력 예시 (p.104)	☞ <u>-</u> 특 즈	업계열 :	산업수요 학과 학 우 다음	요령) 보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등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 사항에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예시》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5시간). 《예시》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5시간).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등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 사항에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 《예시(1~2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 《예시(3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등 -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 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개인별 결과서(인증서)의 응시 영역 참여 상황을 창의적체험활동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 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1호) 〈예시(1~2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 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 평가에 참여함. 〈예시(3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
상황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p.105)	☞ <u>202</u> 진호	ㅏ시 '학교	대입(졸 '' 봉사횔	요령) :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당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봉사활동 실적 입력 내용 (p.105)	주 왕봉/ 구기 왕학: 되는 (호	봉사활동 (학교' 또는 학교' 또는 자활동 실 제적인 장 교교육계획 는 봉사홀 학교)'로 (= '개인 라 입력 적의 '정 소 또는 희(정규교 날동은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한다. 당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당화정 포함)에 따라 시행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식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 1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기재요령) 「☞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봉사활동 실적 입력 내용 (p.105)				※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단, 학대 피해 학생과 학생미혼모의 경우 위탁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학교)재적교명'으로 입력함.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 불가한 경우 (p.105)	□ 기재요령 □ 기재요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기재요령) 『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1)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4) 「소년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5)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조치 등에 의한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헌혈 횟수 인정 범위 (p.106)	□ 기재요령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 (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 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실적 반영 시 유의사항 (p.106)	□ 기재요령 ☞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u>제외해야 하며, 학교생활</u> 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훈령 제243호 (2018.3.1.) 이전의 훈령이 적용된 학생의 복귀시 '희망분야란' 에 자동 반영되는 내용 (p.109)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Estarta 4)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던 고등학생이 휴학, 자퇴, 퇴학, 제적 후 복학, 재·편입학으로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후의 훈령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진로희망 사항' 중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 '희망분야'란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희망사유'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5) 다만, '희망분야'에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창의적 함 왕 상황	유의 사항 (p.109)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등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은입력하지 않음.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및 작속기관 교육자원청및 소속기관*에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작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FF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¹¹(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²²은 입력하지 않음.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작속기관, 교육자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 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유의 사항 (p.109)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비고' 입력 내용 (p.110)	□ 훈령 ☞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 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훈령) ☞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u>학교 간 공동교육</u> <u>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u> ,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 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문구(항목) 수정(훈령) ☞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 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교과 학습 발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내용 (p.110)	□ 훈령 ☞ ⑥ 2.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4.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충학습의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훈령) ☞ ⑥ 2.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 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4. 〈 삭 제 〉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상황	교양 교과 성적 처리 방법 (p.110)	□ 훈령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187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다만, 교양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시에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 (수강자수)'란과 '성취도별 분포비율'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p.111)	□ 훈령 □ 중 (⑤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FOR 15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문구(항목) 수정(훈령) 『○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를 입력한다.
교과 학습 발달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성적 처리 (p.111)			■ 문구(항목) 신설(훈령) □ 문구(항목) 신설(훈령) □ (⑥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 2. 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 문구(항목) 수정(훈령) ☞⑥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상황	학점제 적용 고등학교 (p.111)	□ 훈령 □ ® (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 문구(항목) 수정(훈령) □ 문구(항목) 수정(훈령) □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 문구(항목) 추가(훈령) □ 문구(항목) 추가(훈령) □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 <u>제16항</u> 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전년도와 동일
	별표 9의 항목 표시 형태 (p.111)	❖ 별표 9의 항목 표시 형태는 교육부훈령 제433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표기상의 통일을 위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표시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별표 9의 항목 표시 형태는 교육부훈령 제477호에도 불구하고,「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표기상의 통일을 위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표시함.
	공동교육과정 성적 산출 (p.114)	□ 훈령(별표 9) 1887 4.라.마)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9) 187 4.라.마) 고등학교에서 <u>학교 간 공동교육과정</u> 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9) © 4.라.마)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9) 18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 14.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 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7)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 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 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수 있다. 나)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수 있고, 성취도 또는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라)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9) 187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 라.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 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기)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 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 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나)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 또는 이수 여부를 기록한다. 라)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특수목적고등학교
		라)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여부를 기록한다. 라)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u>일반</u>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점제 적용 고등학교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p.115)	□ 훈령(별표 9) 13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 14.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 II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목 및 학생의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 문구(항목) 수정(훈령 별표 9) □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 라.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 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 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목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 하여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문구(항목) 신설 및 수정(훈령 별표 9) □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 라. 6).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에 편성된 국어・수학・영어의 공통과목, 특성화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II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의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전년도와 동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최소 성취수준 개념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 마련 (p.119)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해설) □ 1. 가. 5) '최소 성취수준'은 각 괴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가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 학기(학년)초에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마련(학교교육계획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공동교육 과정' 및 '학교 밖 교육'의 성적 처리 유형 (p.120)	□ 해설 □ 해설 □ 1. 나.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식치등급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	((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로 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해설) ☞ 1. 나.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 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 (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해설) 1. 나.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 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 (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 고 분 (표준편차) 성취도(수강: 원점수 과목 표준 성취도 명균 편차	자수) 석차 수강 등급 비 고 자수	구 분 원감수/과목평균 성취도 (표준반차) (수강자수) 석차 비 고 점수 평균 편차 도 자수 교과 전문변화 교과	구 분 전점수/과목평균 성취도 (표준반차) (수강자수) 석차 변 교육 표준 (조금 변화 전취도 지수) 등급 지수 등급 기가 (조로선택 기가
	'공동교육 과정'및 '학교 밖 교육'의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공동 교육과정)과목 ○ ○ ○ □ 교과(군) 별 3단계 또는 5단계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u>학교 간</u> 공통교육 과정 과목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공동교육 과정 과정 과목 고목
	교육 의 성적 처리 유형 (p.120)			전로 선택 과목(전로 선택 가목(전로 보고) 보고	전로 선택 과목(진로 전투) 교과 전문 교과 및 과목 이유한 경우 '' 표기 교약 교약 교약 교약 교계(군), 전문교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특성화고등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p.121)	□ 해설 1.다.2)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 II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해설) 1.다.2)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Ⅱ를 전문 공통 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 하였다.	전년도와 동일
	특성화고등 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 (p.121)	■ 문구 수정(해설) □ 1.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표 9'의 해설 ' <u>다목 3</u>)의 하)'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안을 따른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 1.라.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표 9'의 해설 '다목 3'의 <u>파)'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u> , 하)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을 따른다.	■ 문구(항목) 수정(해설) 1.라.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표 9'의 해설 '다목 3)의 파)'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해)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을 따른다.
	'비고'란 자동 표시 내용 (p.121)	□ 해설 1.마.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의 '석치등급'란은 공란으로 두며,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해설) ☞ 1.마.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란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란	■ 문구(항목) 수정(해설) ☞ 1.마. ' 공동교육과정 '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 등급' 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 <u>에</u> 는 자동으로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된다.		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된다. 바.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란에 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이 표시된다.	'공동'으로 표시된다. 바.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 에 는 자동 으로 '학교 밖 교육'이 표시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시 유의 사항 (p.121)	■ 문구 신설(해설) □ 1. 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 및 신설(해설) □ 1. 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전년도와 동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및 '서·논술형 문항'의 출제 비율'설정 (p.122)	□ 별표 9 해설 ☞ 가. 5)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 및 신설(별표 9 해설) □ 가. 5)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 - 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 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 - 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 - 할 수 있음.
	지필평가의 개념 (p.122)	□ 별표 9 해설 □ 발표 9 해설 □ 자(1회,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 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한다. 단,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및 '서답형' 문항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별표 9 해설) □ 나. 1) 본 훈령에서 '지필평가'는 '중간 또는 기말 고사(1회,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한다. 단,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및 '서답형' 문항으로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지필평가의 개념 (p.122)	으로 구성된 평가는 본 훈령의 '지필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된 평가는 본 훈령의 '지필평가'에 해당 하지 않는다. ※ 지필평가 문항 중 선택형 문항(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서답형 문항(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의 구분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 (톺아보기)」자료 참고
	수행평가 유형 (p.123)	□ 별표 9 해설 ☞ 나. 2) '수행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별표 9 해설) □ 20 '수행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수행평가 과제 유형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톺아보기)」 자료 참고 (예) 서술・논술, 구술・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최소 성취수준 설정 (p.123)			■ 문구(항목) 신설(별표 9 해설) □ 다. 1). 가). (4)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 교과 II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전년도와 동일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범위와 방법 (p.123)				■ 문구(항목) 신설(별표 9 해설) □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다)〈생략〉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수행평가 시 유의사항 (p.124)	■ 문구(항목) 신설 및 수정(별표 9 해설) □ 다. 2). 자)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지)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신설(별표 9 해설) □ 다. 2). 자)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차)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행평가 시 유의사항 (p.124)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 해야 함.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함.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함.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p.129)	□ 해설(별표 9) □ 해설(별표 9) □ 다. 3). 파).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별표 9 해설) ESF 다. 3). 타).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 문구(항목) 추가(별표 9 해설) FIST 다. 3). 타).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성적처리 방식 (p.129)	□ 해설(별표 9) □ 대신의 □ 지율고등학교 등의 지원대학 기타생의 □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 평가한 원점수, 과목평교,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 이수 여부만을 기록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9 해설) ☞파)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평가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 여부만을 기록한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처리 방식 (p.130)	□ 해설(별표 9) □ 해설(별표 9) □ 해설(별표 9) □ 작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계열구분 ① 일반고등학교(자율고 포함) ②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 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농생명산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 ③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외 〈예시〉일반고등학교 A(10명), B(10명), C(10명), 마이스터고등학교 20명 총 50명이 직업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미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강자수는 일반고등학교는 30명,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명으로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음. 〈예시〉특성화고등학교의 공업계열 전자과(10명), 통신과(10명), 전기과(20명), 농생명산업계열 축산과(50명), 원예과(20명)이 공동실습소에서 '건설기계운전'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강자수는 공업계열은 40명, 농생명산업계열은 70명으로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별표9 해설) FS (2)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 등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하되,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수 있다. (가)계열구분 ①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②특성화고등학교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농생명산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등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제외):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예술계열,체육계열 (예시)일반고등학교 A(10명), B(10명), C(10명),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20명총 50명이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등에서 '드론운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강자수는 일반고등학교는 30명,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는 20명으로 분리하여산출할수있음. (예시 삭제)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해설(별표 9)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현장 실습생의 성적 처리 방식 (p.131, p.132)	□ 다. 3). 거). (1)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현장실습대상기관,실습기간을해당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참고하여 입력한다. □ 다. 3). 거). (1) (다) 청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영역의 입력은 재적학교 및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학급담임교사가 작성한다. (바)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활동의평가,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이외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서술식으로 입력한다.	■ 다. 3). 하). (1)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 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 다. 3). 하). (1)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재적학교 및 현장 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담임교사가 작성한다. (바)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다. 3). 하). (1)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OJT) 참여 학생 포함)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 다. 3). 하). (1)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현장실습(현장실습) 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등) 기간중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하는경우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학급담임교사가 작성한다. (바)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 해설(별표 9)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1.○○.○○2021.○○.○○. 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u>미용·관광·레저</u> 실습기간: 2022.○○.○○2022.○○.○○. 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해설(별표 9)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실습기간: 2021.○○.○○2021.○○.○○. 실습내용: 공작기계용 부품 가공	전년도와 동일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실습기간: 2023.○.○2023.○○. 실습내용: <u>서브머지드 아크용접</u>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실습기간: 2024.○○.○○2024.○○.○○. 실습내용: <u>피복 아크 용접</u>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현장 실습생의	□ 해설(별표 9)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기타(글로벌 현장 학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1.○○.○○2021.○○.○○. 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기타(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4.○○.○○2024.○○.○○. 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
	성적 처리 방식 (p.131, p.132)	□ 해설(별표 9)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여부, 현장실습대상기관, 실습 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며, (1)의 (가)~(바)의 내용을 준용하여 입력할 수있다. ※ 이 때, '현장실습 직무분야'는 교육과정의 해당교과(군) 중에서 입력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 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며, (1)의 (가)~(바)의 내용을 준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 때, '현장실습 직무분야'는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군) 중에서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p.132)	□ 문구(항목) 조정(별표 9 해설) 다. 3), 너) 신설 및 수정 □ 너)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방식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과정(구 종합고 직업계열) 간 전문 교과 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 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 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별표 9 해설)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별표 9 해설) 성적처리 방식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 수요 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 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별표 9 해설)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별표 9 해설)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 수요 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 교과 괴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괴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괴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 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별표 9 해설)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별표 9 해설)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등).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함. •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 및 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p.132)	※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1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고등학교」103쪽 (예시)표 참조 (2) 단,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거점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상관없이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의 별도 개설·운영 및 별도 성적 산출 가능(교육부 고교혁신과 -3378, 2020.12.29.).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2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고등학교」103쪽〈예시〉표 참조 (2) 단,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거점학교학생과 타교학생을 분리하여 타교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농어촌·도서벽지 등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본교(거점학교)와 타교학생(공동교육과정)을구분하여운영하는 경우동일 과목의별도 개설·운영및별도 성적산출가능(교육부고교혁신과-3378, 2020.12.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 ※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2023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고등학교」102쪽 (예시)표 참조 (2)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내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 II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u>일반고등학교</u>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1호) ※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 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u>2024</u>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u>120쪽</u> (예시)표 참조 (2)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p.132)			□ 문구(항목) 신설(별표 9 해설) □ 문구(항목) 신설(별표 9 해설) □ 대 3). 너)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 진로 선택 과목 □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객관적 교육내용만을 입력한다. □ 한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단위 이수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의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 전문교과 Ⅱ □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방법: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별표 9 해설) © 다.3).너)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1)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 진로 선택 괴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단위 또는 학점)만을 입력한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단위 이수함.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 전문교과 Ⅱ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학점'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p.132)			편차)', '성취도 5단계(수강자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 밖 교육 직무분야: ○○(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 ○기간: 20○○○○○○○○○○○ ○교육내용: ○○○○○○○○○○○○○○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직무분야, 이수학점)만을 입력한다.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특기사항 입력예시〉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작무분야(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를 ○학점 이수함.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동일 평가 성적 미비한 경우의 성적처리 (p.134)	□ 해설(별표 9) 마. 1) 복학 및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1회교사 성적 2회교사 성적 원적교 재입학 등 2회교사* + 재입학 등 2회교사* + 개입학 등 2회교사 성적 이 없는 경우, 인정점 부여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 대한 및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원적교 재입학 등 기계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학습과정 입력 방식 (p.135)	■ 문구(항목) 수정 추가(별표 9 해설) Let 마. 7)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가)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보충 학습 과정'을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EW 마.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보충 학습 과정'을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점제 적용 실무 과목의 보충학습	□ 해설(별표 9) □ 해설(별표 9) □ 자. 8)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II 실무과목의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및 보충학습과정 이수 입력방식 가)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전문교과 II 실무과목(2020학년도 기준 1학년부터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별표 9 해설) Find The Note Find The No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 마. 8) 전체 고등학교에 편성된 보통교과 공통 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 교과 II 실무과목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를 최소 성취수준으로 설정하되, 이에 따른 분할 점수는 해당과목별로 학교가 정할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 마. 8) 전체 고등학교에 편성된 보통교과 공통 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와 특성화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실무 과목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를 최소
	과정 이수 입력 방식 (p.135)	순군교회 (글구의 국(2020학년도 기군 학학간 다 학년구학 순차적 적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예: 성취율 40% 미만) 나)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한 경우 이수 내용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시간, 이수기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적용)의 전문교과 II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한다. (예: 성취율 40% 미만)	작는 문을 음구는 에용파독을로 목표가 영울 수 있다.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교육부 고교교육 혁신과-3111(2021.8.24.))	성취수준으로 설정하되, 이에 따른 분할 점수는 해당과목별로 학교가 정할 수 있다.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교육부 고교교육 혁신과-3111(2021.8.24.))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방송통신고 학교 외 학습경험 과목이수 입력방식 (p.135)	■ 해설(별표 9, 마. 9)) 신설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2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과목 이수 인정을 받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목 이수 입력 방식 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를 인정 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해설(별표 9, 마. 9)) 수정 □ 하설(별표 9, 마. 9)) 수정 □ 하성(별표 9, 마. 9)) 수정 □ 하성(기준력) 제3조2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과목 이수 인정을 받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목 이수 입력 방식 기(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 (p.136)	□ 해설(별표 9)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수강자수별 등	급인원 조건표	■ 문구(항목) 수정(별표 9 해설)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u>견</u>표
	표준 가이드라인 (p.138)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 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 <u>과목별</u>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표준 가이드라인 (p.138)	●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			●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향'을기재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 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유학기간의 기록 기재 불가 (p.139)	■ 다.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둔다. ※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다.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공란으로 둔다. ※ 해당 기간의 기록은 핵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 기재요령			■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
	대입수시 전형자료 생성 시 유의사항 (p.140)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② 가. '세부능력 및 특기시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단, 대압수시 전형자료 생성 시에는 3학년의 괴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3학년 1학기(조기졸업생은 2학년 1학기)' 내용만 생성・제공되고, '2학기' 선택 후 압력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p.140)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범위 (p.140)	1)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전문 교과॥의 기초 과목, 실무 능력 단위 포함 입력 안내 (p.140)	□ 기재요령 ☞ 전문교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이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입력 서식 ※(학기명) 과목명: [능력단위 : 능력단위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예시〉(1학기)식품품질관리: [능력단위:입고검사] 입고 검사 절차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제작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입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EX 전문교과 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 입력 서식 ※(학기명) 과목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단.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으로 표기) 《예시》(1학기)식품품질관리: 식품 제조의 전과정에서 품질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음. [능력단위: 입고검새 이수 시 발주서에 따라 원·부재료의 입고 품목을 확인하고 각 품목별 입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특히 샘플 검사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기록한 후 발표함.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전문교과 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 입력 서식 ※(학기명) 과목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단,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으로 표기) 〈예시〉(1학기)식품품질관리: 식품 제조의 전과정에서 품질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음. [능력단위: 입고검사] 입고 시 발주서에 따라 원·부재료의 입고 품목을 확인하고 각품목별 입고 절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특히 샘플 검사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기록한 후 발표함.	전년도와 동일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사항 (p.141)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교 학 발 상황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사항 (p.141)	다른 경우 •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의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 방과후 학교: 삭제 •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지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 기관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 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다른 경우 •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개설되지 않은 경우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 매체를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실무과목의 '보충학습 과정'이수 여부 입력 (p.141)	□ 기재요령 ☞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한 경우 '보충학습 과정' 이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보충학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기명) 과목명: 보충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OO 시간(2021.00.002021.00.00.) 이수함.	■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 ☞ <u>바. 〈삭제〉</u>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방송·정보 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 가.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설치 구입 (온라인수업) 성적 처리 및 입력 방식 (p.142)	다) 전·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 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참조).	다) 전·편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 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 편 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참조).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 신설(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p.142)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120시간을이수함. [기재 방법] ○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기재 방법] ○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기재 방법]	□ 1)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성적-성적처리 -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기재 방법]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입력하지 않음.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을
		○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적] - [성적 처리] - [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괴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 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이수함. ○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제구궁덕깆둑기사양에서 (@) 식일사들 신파 ㅎㄹ 이려하고 트기사하은 드로하 ㅎ 대인저혀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또는 [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

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대입전형

자료에서 제외됨.

〈예시〉〈@〉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전형

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명 (-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u>(S</u>	(2024 포 영재교 이수나 입력 (p.14	교육 내용 력	《예시》 (@)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정보 영역 (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 2024학년도 대압(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시향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교 학 발 상	습 답 달	내용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 신설(기재요령) □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 (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 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 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 ○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괴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 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 (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 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 ② 2022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 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ESF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 란에만 입력한다.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경우 [성젴]—[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자체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명칭을 입력하지 않음. ○ [성젝]—[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후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됨. 〈예시〉〈@〉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압(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기재요령) □ 방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명칭을 입력하지 않음. 《예시》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고급과정(20시간)'을 수료함.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대입전형자료에서 제외됨.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교과학습발달상형의 '채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점(학교생활기목부 작성 시 유의 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대회에 와 우신 전체 전체 한 환경 한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 와 우신 실적 근로 기재 불가) - 교내 '외 인종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과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실실적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논서울간 사실, 지식재산권(특취,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내용 (항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 - K-MOOC, MOOC, KOCW -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 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	(항목) (2024 페이지 학습 사항 발달 (p.146)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 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 - K-MOOC, MOOC, KOCW -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 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시항'란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감사장,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석차,석차등급,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일체)및관련교내 수상실적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출간 사실,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등)출원 또는 등록 사실 -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금지한 사항일체 - K-MOOC, MOOC, KOCW -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관련사항일체는 기재할수 없으며,탐구보고서등으로 편법적 기재금지 ※ 대회와 관련하여,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불기('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독서활동 상황 입력 (p.147)	■ 문구(항목) 수정(훈령) File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학기단위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독서	표준 가이드라인 (p.148)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FSF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기재 가능함(정기 간행물은 입력 불가).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활동 상황	유의 사항 (p.148)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FS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입력 할 수 있음.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제공하지 않음.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 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핵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에 중복 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 하여 입력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제공하지 않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훈령 제16조(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p.149)	□ 훈령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훈령 제477호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학년)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훈령 제16조(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p.149)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② 〈 삭 제 〉 □ 훈령 제393·433호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2·3학년) 전년도와 동일
		□ 해설	■ 문구(항목) 수정(해설)		■ 문구(항목) 추가 및 신설(해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의 기재내용 및 누가기록 관리 (p.149)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가 기록하는 경우 에는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 및종합의견]에서 입력함.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가 기록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서 입력함.	전년도와 동일	□ 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 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가 기록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 및종합의견의 {누가기록} 탭에서 입력함.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 문구(항목) 추가(해설)		■ 문구(항목) 추가(해설)	□ 문구(항목) 삭제(해설)(1학년)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p.150)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유보(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인에한하여 적용)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기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조건부기재유보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전년도와 동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자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하고, 해당 조치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삭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학년)에 신설 □ 문구(항목) 수정(해설)(2·3학년)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기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행동 등 및 합견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p.150)	※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 ※ 동일한 학교폭력 시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각해당 영역에 입력함. ※ 학교장은 '학교폭력 기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기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자(효력정자)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입행정지(효력정지) 결정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여부 결정함. 2) 위 '다'항 '1)'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기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유보된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 ※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각 해당 영역에 입력함. ※ 학교장은 '학교폭력 기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기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자(효력정자)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여부 결정함. 2) 위 '다'항 '1)'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유보된조치사항을 포함하여모두 입력한다.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정이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p.150)	《예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7호의 경우 《예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일 일자에 동일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예시》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2개 이상 (제1호, 제7호) 병과하여 받은 후 제1호는 이행하여 입력이 유보된 경우		(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7호의 경우 (예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일 일자에 동일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예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2개 이상 (제1호, 제7호) 병과하여 받은 후 제1호는 이행하여 입력이 유보된 경우	
행동 특성 및 합 의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삭제 절차 (p.151)	■ 문구(항목) 수정(해설) □ 문구(항목) 수정(해설) □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8]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삭제 및 수정(해설) □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8]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학교폭력 가해 조치 후 긍정적인 변화 내용 기재 관련 (p.151)	□ 해설 □ 하설 □ 하고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삭제(해설) ☞ 마. <u>〈삭제〉</u>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행동 특성 및	영재교육기관 에서 수료한 영재 교육 관련 내용 입력 범위 (p.152)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 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입력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 부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및 특기시항'란에 입력한다.(근거 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2항)	전년도와 동일
종합 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유의사항 (p.152)	■ 문구(항목) 신설(유의사항) □ 유의사항 □ 아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 가능함.	전년도와 동일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시항'란에 입력한다.(근거 법령: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2항)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훈령) □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산업체 실습과정	■ 문구(항목) 삭제(유의사항) □ ○ 〈삭제〉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 가능함.
기타 사항	'전공·과정' 입력 (p.153, p.155)	□ 훈령 □ ** '전공·과정' 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이타학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과목명을 입력한다.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훈령) 10	다 (의 '전공·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년도와 동일
		□ 훈령 해설 ☞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	■ 문구(항목) 추가(해설) File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해설)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 실습	■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해설) 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지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교육 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 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 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지율고등학교의 개인별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한다.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교육 위탁과정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없을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한다.
		□ 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기타 사항	'전공·과정' 입력 (p.153, p.155)	■ 기.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과정(구. 종합고 직업계열)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 세부전공(전공코스) 입력 서식 ※(세부전공) 과정명 나. 전공·과정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현장 실습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에서 '교육구분'을 '직업과정위탁교육' 또는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교육구분(전공명)' 형식으로 반영된다.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 전공(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 세부전공(전공코스) 입력 서식 ※ (세부전공) 과정명 나. 전공·과정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현장 실습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에서 '교육구분'을 '직업과정위탁교육' 또는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교육구분(전공명)' 형식으로 반영된다.	□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산업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산업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 이수, 산업체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을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지정한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 나. 전공·과정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에서 '교육구분'을 '직업과정위탁교육' 또는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교육구분(전공명)'형식으로 반영된다.	□ 기.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 계열학과*의 학기별 세부전공(전공과정명)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일반고등학교·특수 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을 입력한다. ※(세부전공) 전공과정명 / 〈에시〉(세부전공) CNC 선반과정 *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나. 전공·과정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급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급학생관리학생원급학생관리학생교급학생원급학생관리학생원급학생원급학생원급학생원급학생원급학생원급학생원급학생원급학생원급학생원급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타 사항	'전공·과정' 입력 (p.153, p.155)	□ 기재요령 ☞ 마.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 과정'란에 '(부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학점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의 '전공·과정'란에 '(부전공) 타학과 전공과정명'으로 입력한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라.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타학과 수업을 24 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수를 완료한 핵년·학기의 '전공·과정'에 '(부전공) 타학과 전공과정명' 으로 입력한다. ※ (부전공) 타학과 과정명 / 〈예시〉(부전공) 기계과정
	사진 파일 용량 (p.155)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200KB (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까지 지원 하며, 사진일괄을리기 메뉴의 사진일괄변환 버튼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교육정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200KB (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까지 지원하며, [학적-기본학적관리-사진일괄입력]의 {사진일괄변환]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자료의 보존	학교생활 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 사항기록부의 보존· 관리 방안 (p.156, p.157)	□ 훈령 □ 호명 □ 호명 □ 호명 □ 호교 성 호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 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 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해설 □ 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 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는 해당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IST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를 학생 졸업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항목) 수정(해설) IST 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는 해당학생 졸업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이후 관할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 훈령 □ 훈경 □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훈령)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Ⅱ)의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	■ 문구(항목) 수정(훈령)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자료의 보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7호, 제8호)의 삭제 시기 (p.156)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하기 직전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입력된「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 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제1호, 제2호, 제3호) 의 삭제 시기 (p.156)	□ 훈령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문구(항목) 수정(훈령)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정정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종료 시기 (p.158)	■ 문구(항목) 추가(훈령)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때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 시 심의내용 (p.158)	■ 문구(항목) 추가(훈령) 1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자료의 정정	정정대장 작성의 주체 (p.160)	□ 해설 IST 나. 입력자(사용자)는 그 입력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료입력 당시 사용자가 자료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발견 핵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한다. 정정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해설) IST 나. 입력자(사용자)는 그 입력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료입력 당시 사용자가 자료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발견 핵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한다. 정정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 대조학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업무 담당자가 수행함.
	졸업생의 정정 절차 (p.160)	□ 해설 IST 다.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종전의 모든 학교 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별표 10의1 서식에 의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해설) IST 다.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종전의 모든 학교 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0의 1조 서식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교과학습발달 상황 및 수상경력 정정 절차 (p.160)	■ 문구(항목) 수정(별표 10 해설) ^{168*} 나.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교과학습 발달상황 은 교과목 성적 재산출과 보조부(교과목 성적일람표)의 정정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또한 수상대장에 반영된 수상경력의 정정 시 '수상대장반영여부'를 선택하여 학교 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별표 10 해설) FST 나.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목성적 재산출과 보조부(교과목 성적일람표 등)의 정정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또한, 수상대장에 반영된수상경력의 정정 시 '수상대장반영여부'를 선택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전년도와 동일
자료의 정정	정정 시 학생부 출력물 보관 여부 (p.161)	□ 기재요령 FIST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확인 가능).	■ 문구(항목) 추가 신설(기재요령) EWF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확인 가능). 단.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후 내용확인 가능). 단,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후 내용확인 가능). 단, 유급·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보관한다.
	정정 대장 작성 예시 (p.162)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예시》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전월일 학년도 학년 반호 (경정 전) 전월일 학년도 학년 반호 (경정 전) 전월일 학년도 학년 학년 학년 학교목학원 및 대원에 후 학교목의 제원 기업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자료의 정정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p.163)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 1)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한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결재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 교감 미배치교, 담임과 담당부장이 동일인인 경우 등(장기연수, 출장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간 공석은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4단 결재가 불기능한 경우: 모든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참석 위원 인원을 결재 단계에 포함하였음에도 교원 수의 부족으로 4단 결재가 불가한 경우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따른 정정대장의 온라인 제공 시 제외 항목 (p.164)	□ 기재요령 ☞ 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입교와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으로 별표 10의 1조의 서식으로 전송된다. 다만, 고등학교 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 제공 시 인적·학적사항의 학생 정보, 학교폭력 관련, 질병명의 정정내용은 온라인으로 전송 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 E® 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입교와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으로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0의 1조의 서식으로 전송된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 제공 시 인적・학적사항의 학생 정보, 학교폭력 관련, 질병명의 정정내용은 온라인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전년도와 동일
준용 등	준용 등 (p.167)	□ 해설 ☞ 1. 제21조(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업무에 준용할 관련 법규는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해설) ☞ 1. 제21조(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업무에 준용할 관련 법규는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영역 (항 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준용 등	준용 등 (p.167)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본 훈령의 규정에 준거한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교육규칙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등이다.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본 훈령의 규정에 준거한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교육규칙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등이다.

총괄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과 장 유희승

기획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교육연구관 김승환

교육연구사 심대현, 김효수

행 정 주 사 최봉석

제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책임자 정은주

공동연구자 김수진, 최인봉, 강민경, 김성경, 이현경

파 견 교 사 하은정

연구조원 한금영, 이선희

검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 사 송준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 사 정준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사 정진구

충 청 북 도 교 육 청 교 사 이석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사 박소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사 안정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등학교

항목별 훈령 및 지침(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최근 4년간)

2024년 2월 발행

발행처





디자인 | (주)다원기획 044-865-8115